

미국 로스쿨의 운영 실태

송근준*

I. 글머리에

지난 2004년 10월 18일 대법원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법조인 양성 및 선발”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가칭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에도 미국식 로스쿨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동 건의문에 의하면, 국민의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여 양질의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 및 자유, 민주, 평등, 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보다 전문적,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개방되어 가는 법률시장에 대처하며 국제적 사법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적인 경쟁력과 다양성을 지닌 법조인을 배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양한 전공의 기초 위에서 전문적으로 법률이론 및 실무 교육을 담당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동 건의문에서 밝히고 있는 구체적인 실시 방안에 의하면 2008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대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여 종래 법과대학과 사법연수원에서 각각 실시하던 법률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들은 약 3년의 수학기간을 거쳐 현재의

*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사법시험을 대신한 자격시험인 가칭 “변호사시험”을 통하여 법조인으로 배출된다.

2008년 도입되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일견 미국식의 로스쿨제도와 유사하게 보인다. 즉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그 교육기간도 약 3년이며,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친 학생 만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실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등은 미국식 로스쿨제도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로스쿨의 학생 선발, 커리큘럼, 실무 교육 및 미국 변호사 시험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국에서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고려해 보아야 할 시사점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II. 미국로스쿨의 학생 선발 방식

미국식의 로스쿨제도는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법률시장에 변호사를 대량으로 공급하여 변호사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경쟁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로스쿨들의 학생 선발 기준은 크게 학생들의 학부 성적과 법대입학시험 (Law School Admission Test)으로 나눌 수 있다. 미국 로스쿨들은 로스쿨 입학생들이 치를 표준 시험을 위해 로스쿨 입학 위원회 (Law School Admission Council)라는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202개 로스쿨이 참여한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였다. 동 위원회는 LSAT의 시험 주관 및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LSAT는 일년에 4회에 걸쳐 세계 각지의 지정된 시험 장소에서 시험을 치루도록 하고 있다. 시험 분야는 로스쿨 지원생들이 다양한 학문, 인종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 과목들보다는 로스쿨 학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독해력 및 논리력을 시험 과목으로 한다. 즉 복잡한 문장을 독해하는 능력, 비판적인 사고 능력, 다양한 정보들을 정리하여 연역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주장이나 논리를 비판하는 능력들을 시험한다.

미국 로스쿨에서의 학생 선발은 LSAT 점수와 학부 때의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 미국 로스쿨을 소개하는 각종 책들을 보면 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평균 LSAT점수와 학부 성적을 기재하여 학생들에게 참고가 되도록 하고 있다. 기타 학생들의 활동, 경력, 인종 배경 등이 고려의 대상이 되며 로스쿨의 성격에 따라 로스쿨이 위치한 지역 출신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은 미국 로스쿨의 예로 볼 때, 앞으로 학생 선발에 있어서 법학전문대학원들은 표준 입학시험의 도입 여부, 만일 미국 로스쿨 형태의 표준입학시험을 도입할 경우 어떤 내용을 시험 볼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학부 성적 등 다른 기준들을 어느 정도 반영할지 여부도 결정하여야 한다.

III. 미국 로스쿨의 커리큘럼

1. 1년차 교육

미국 로스쿨의 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치열한 경쟁의 한복판에 서게된다. 1년 차 수업은 영미법의 보통법 (common law)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기초적인 법이론들을 습득한다.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 과목으로는 헌법 (Constitutional Law), 민사 절차법 (Civil Procedure), 형법 (Criminal Law), 계약 법 (Contracts), 재산법 (Property), 불법행위법 (Torts) 등이 있다. 특히 로스쿨 학생들은 매 수업마다 약 200~300여 페이지가 넘는 판례와 관련 자료를 소화해야 하고 교수들은 판례의 의미에 대하여 소위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통하여 학생들과 논쟁을 한다.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은 학생들이 판례를 미리 읽어 오고 교수들은 학생을 지적하여 소송 사건의 개요를 우선 간단히 설명하게 한 후, 각 당사자들이 제시한 논리를 물어보며 그러한 논리 전개 이유, 논리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한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법정에서 흔히 겪게 되는 변론의 과정을 체화시키고 판례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키우기 위해 사용하는 학습 방법이다. 특히

수업시간의 발언과 참여도가 학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몇 명씩 스터디그룹을 형성하여 밤을 새워 수업준비를 하는 것이 일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로스쿨의 시험은 대부분 특정한 사건의 예에 대한 분석을 하도록 한다. 즉, 시험 문제는 가상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질문은 간단히 위의 이야기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 그리고 이와 같은 법적인 문제들에 대한 각 당사자들의 반론들을 정리하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험에서 중요시되는 것은 학생들이 법이론을 얼마나 추상적인 차원에서 잘 외우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러한 추상적인 개념들을 구체적인 사건에 얼마나 잘 적용할 수 있는가, 즉 다양한 사실들 중에서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실들은 어떤 것들이며 그러한 사실들이 왜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당사자들은 그와 같은 법적인 문제들에 대해 어떠한 대응 논리를 펼 수 있는지를 학습시간에 배운 다양한 법이론과 특히 판례들을 중심으로 기술해야 한다.

미국의 1년차 교육은 사실 상 한국에서의 사법고시 공부 과정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로펌들은 2년차를 마친 학생들이 여름 방학 동안 일 할 여름 인턴들을 2년차 1학기에 선발한다. 2년차 여름 인턴으로 선발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졸업 후 같은 로펌에서의 취직이 보장됨으로 학생들은 2년차에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는데 명망 있는 로펌 등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인다. 만일 여름 인턴으로 선발되지 못할 경우 소형 로펌이나 공공 단체, 개인 사무실 개소 등의 대안을 개인적으로 알아보아야 한다.

미국 로스쿨에서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여러 로펌들을 학교로 초청하여 학생들을 면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1년차 성적 및 자신의 이력서를 방문 예상 중인 로펌이나 각종 단체에게 보내면, 방문 로펌이나 단체에서는 면담 예정 학생들을 공지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명망 있는 로펌들은 1학년 때 학점을 가장 중요시하여 1학년 때 우수한 성적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명망 있는 로펌과의 면담조차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학점을 받기 위하여 치열하게 노력하는 것은 물론

이고 교수로부터 좋은 추천서를 받기 위하여 교수의 지도 하에 논문을 쓰기도 하고 로스쿨의 취업알선사무소에 빈번하게 드나들면서 취업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 졸업 이후를 대비한다.

2. 2, 3년차 교육

1년차의 기초 과정이 끝난 이후, 2년차부터는 각 학생들의 취향 및 앞으로의 진로들을 고려하여 전공 필수 과목은 거의 없어지고 모두 선택 과목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며 과목의 수는 세미나 등을 포함하여 거의 100여 과목이 넘는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교과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중점 분야들을 정해주고 그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관련 과목들을 택할 수 있도록 관련 과목들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해 준다. 예를 들어 기업법에 관심이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회사법, 소비자법, 증권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의 주요 법학 과목들과 비영리 단체, 합병 및 인수, 비법인 영리 단체, 비영리 법인 등의 세미나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주요 분야들은 각 학교마다 다르지만 필자가 다닌 보스톤 대학 로스쿨의 경우 은행법, 환경법, 기본권법, 노동법, 환경법, 상법, 기업법, 특허법, 가정법, 형법, 세법, 소송법 등의 분야가 있었다.

3. 실무 교육 및 기타 교육

이와 같은 다양한 과목들 외에 미국 로스쿨은 학생들에게 실무를 가르치기 위하여 다양한 실무수습 프로그램 (clinical programs)을 두고 있고 이를 위해 광범위한 겸임교수 (Adjunct Professor)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실무교육을 실시하면서도 학생들에게 법학이론에 천착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예를 들어 보스톤 로스쿨의 경우 민사소송실무수습, 입법실무수습, 형법실무수습, 각 법분야별수습 (환경법, 가정법, 세법, 증권법 등) 등이 있었다. 민사소송실무수습 프로그램의 경우 교수들과 겸임교수들이 전체 프로그램을 맡고 학생들은 민사소송과 관련한 기초 과목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와 동시에 2, 3년차 동안 각 종 민사관련 소송에 실제 참여하여 그 과정에서 실무를 익히게 된다. 프로그램이 실제 실습 위주이기 때문에 선발 학생 수는 38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위와 같은 기초 과목 이수 및 실무 교육 외에 미국 로스쿨의 졸업을 위해서는 모든 학생들이 논문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 박사 과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완성도를 요구하는 논문은 아니나 일반 석사 과정보다는 높은 수준의 논문을 요구한다. 위와 같은 다양한 과목 및 실무 경험 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정은 비록 그 자체로써는 로스쿨의 커리큘럼은 아니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만든 각 종 법학잡지에서의 활동이 있다. 미국 법학잡지에 수많은 로스쿨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기고한 논문을 보면 단순한 판례평석의 정도가 아니며, 자신의 학부, 석사 및 박사과정에서 섭렵한 이론을 바탕으로 고도의 학문적 소양을 발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의 내용으로 볼 때, 미국 로스쿨에서의 법학 공부는 가히 백화점식이라고 할 수 있다. 기초 법이론으로부터 최신의 법분야들까지 이르는 법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학습을 그 근간으로 하나 법학잡지 활동, 논문 작성 등의 과정을 통해 학습한 법이론들을 발전시키는 학문적인 학습을 추구하는 동시에 실무실습 프로그램, 여름 인턴 등을 통해 실무를 습득하기도 한다.

위와 같은 다양한 교과와 실무 교육 등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교수진의 확보, 겸임 교수 등의 형태로 실무나 최신 분야를 가르칠 수 있는 교수의 확보 등이 시급한 문제이며, 법원, 로펌, 변호사 사무실 등 이미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는 각종 단체들의 도움도 절실하다.

4. 미국에서의 변호사 시험

참고로 미국식 로스쿨에서 변호사시험은 일종의 “통과의례”에 불과하며 로스쿨 교육과정에서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강의는 거의 없으며, 로스쿨 졸업 후 취업과정에서도 변호사시험 합격이나 변호사 시험의 성적이 거의 고려요소가 되지 않는다. 로스쿨 졸업생이 졸업과 동시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졸업생을 이미 선발한 로펌, 법원 도는 정부에서는 이를 거의 문제 삼지 않는다. 약 3년의 로스쿨 수료 후 여름에 치러지는 변호사 시험에 약 2개월 정도의 집중적인 준비를 거치면 팬찮은 로스쿨을 나온 학생들은 90% 이상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다. 물론 일정 기간 내에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 변호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로펌, 법원 또는 정부는 선발시 변호사시험자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로스쿨에서의 성적, 학생들이 편집하는 법학전문잡지관련 활동, 교수의 추천서, 기타 로스쿨에서 실시하는 모의법정에서의 수상 등을 주된 기준으로 선발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커리큘럼은 추후 판사, 검사 임명 기준, 로펌들의 선발 기준 등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현행과 같이 변호사시험의 석차가 주요 로펌에 취직하거나 검사나 판사 임관의 주요 기준이 된다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환경도 현재의 사법연수원에서의 교육환경과 전혀 다를 것이 없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 왜곡되고 심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이 또 다른 형태의 “고시원”으로 전락하게 될 우려도 있다. 이 경우 사법개혁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으로 기대했던 중요한 효과 중의 하나인 법학전문분야교육의 강화는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즉 미국 로스쿨에서의 경우 요컨대 미국의 로스쿨과 같이 학생들이 자유롭게 증권거래법, 조세법, 통상법, 환경법 등 다양한 전문분야에 천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 대학원 수료 후 변호사 시험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사법개혁위원회가 마련한 방안에 의하면 변호사시험에 대한 부담은 3년간의 교유기간 내내 상존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왜곡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우려가 있다.

사법개혁위원회의 전의안대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이 1200명 정도라면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을 200명이라고 한다면 겨우 6개 법과대학이, 입학정원을 100명씩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전국의 법학대학 내지 법학과의 상당수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만이 변호사 등 법조인을 배출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탈락한 법학대학이나 법학과에서는 법조인의 배출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법학교육을 하도록 하는 법학교육의 이원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IV. 기타 고려 사항

다음으로 법조인의 길을 걷고 싶은 학생의 입자에서 가장 큰 문제는 3년간의 법학전문대학원의 학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하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종래의 법원의 별정지공무신분인 사법연수원생들에게 봉급을 지급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논란이 되어 왔으나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는데 그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에게 국가에서 봉급을 지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대다수의 대학졸업생들은 상당한 액수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학비와 생활비를 적절하게 조달하지 못할 경우 법조인으로 진출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의 대부분의 사립로스쿨의 한해 입학금은 35,000불이 넘으며 생활비 까지 합하면 약 50,000불에서 60,000불이 소요된다. 따라서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한해 50,000불 정도라고 낮게 잡아도 3년이면 약 150,000불(약 1억 6천 여만원) 정도의 매우 값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학 전문대학원도 미국의 사립로스쿨 정도는 아니겠으나 상당한 높은 수준으로 수업료가 책정될 것이고 로스쿨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이미 학부를 졸업하였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기회비용도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안에서도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도록 학교의 재정상태, 장학금 제도 등을 인가심사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로스쿨처럼 외부에서의 기부금에 힘입어 학교 전체의 운영비에서 학생들의 수업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를 기대하기 힘든 우리나라의 대학현실에서 신설되는 법학전문대학원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우수한 학생에게 배려해 줄 수 있는 정도에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의욕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새로운 법조인양성제도는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에서의 교육 과정이 법조인의 선발 방식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제약과 미국식 로스쿨식의 운

영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법학전문대학의 실제적인 운영은 위와 같은 두 가지 요소에 의해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다.

사법개혁위원회가 제안한 새로운 법조인력양성제도는 대체적인 골격에 불과한 만큼 차제에 사법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켜 법조인 양성제도를 개선하고자 했던 원래의 기본취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향후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안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는 이러한 원래의 기본취지를 실리는 방향으로 법조인, 정부, 시민사회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된다.